

NEWSLETTER855

July 24, 2023

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 통보 - 적용대상 및 직접운송 입증 서류 등 안내 -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물품이 FTA협정 체결국가간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 물품이 제3국에서 단순 경유 또는 환적되는 경우에는 제3국(경유국)이 FTA 체결국가가 아닐 경우에도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 (원유·액화가스 등)의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원유·액화가스 등)의 한-미 FTA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Ⅱ. 적용 대상

1. 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2. 물품

- 미국에서 선적되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후 <u>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u>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u>미국산 액체화</u> 물로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물품(이하 "미국산 액체화물")

Ⅲ. 직접운송 입증 서류

1. 운송경로 입증 서류

단독으로 또는 함께 제시되었을 때 <u>미국산 액체화물이 수출국인 미국에서 수입국인 우리나라로 이동하는</u>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선하증권 등)

* 예) 미국에서 파나마로의 운송서류 + 파나마에서 우리나라로의 운송서류

2. 비가공 및 세관 통제에 관한 입증 서류

미국산 액체화물이 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되었음이 확인되는 <u>파나마 항만청(Panama Maritime Authority)</u> 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 (STS Operations Supervision Report) (*첨부 확인서 참고)



Ⅳ. 시행일자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나,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해상 환적 작업감독 확인서'도 유효성 인정

l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관세청 지침) [붙임2]파나마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 서식

I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011-3464 E jycha@esein.co.kr



김혜원 관세사 T 070-4353-1596 E hwkim@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